

수성자산운용(주) 일임계약 투자권유준칙

제1조 (목적)

본 업무지침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의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개요)

- 회 사 명 : 수성자산운용(주)
- 등록번호 : 110111-3646126
- 대 표 자 : 박세연
- 자 본 금 : 40억원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16층
- 설 립 일 : 2007.04.01
- 투자자문업 등록일 : 2007.07.03
-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7.07.03
- 투자일임(자문) 인력 Profile

<CEO>

이름	직급	담당업무	학력	운영경력	당사근무
박세연	대표이사	총괄	대졸	22년	11년

<운영본부>

이름	직급	담당업무	학력	운영경력	당사근무
최정무	부장	운영	대졸	13년	7년
정길완	차장	운영	대졸	8년	8년

-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현황>

직위	성명	상근여부	담당업무
부사장	박윤수	상근	마케팅
전무이사	한여선	상근	마케팅
전무이사	윤덕화	상근	마케팅

<대주주 및 주요주주 현황> 최대주주 박세연52.5%(특수관계인 포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 고
박세연	180,000	22.5%	대표이사
정승은	140,000	17.5%	박세연과 특수관계인 (박세연의 배우자)
박연선	100,000	12.5%	박세연과 특수관계인 (박세연의 동생)
조이앤제이파트너스	260,000	32.5%	-

(주)			
기타	120,000	15.0%	-
합계	800,000	100%	-

제3조 (투자일임의 범위 및 제공방법, 투자대상)

제1항 투자일임의 범위 및 서비스 내용

1)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투자일임 자산이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② 투자일임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③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 ④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 ⑤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 ⑥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 ⑦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운용에 개입하기 위하여 「위탁투자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위탁투자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투자지침이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자산의 운용
- ②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 ③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 ④ 기타 투자일임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투자일임의 제공방법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유무선 통신, 서면 및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제출,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계약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3항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운용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에 정의된 증권
 -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 및 출자지분 등
 -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채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5조에 정의된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금융기관의 예금, Call Loan, 금융기관이 발행한 CD, CP 등
 - 기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4조 (투자일임업무의 투자지침 및 수행절차)

제1항 회사의 투자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성장성을 고려한 가치투자
- 2) 철저한 위험관리
- 3) 적절한 운용 자산배분
- 4) 자산의 적극적 운용과 장기투자 지향
- 5) 기본에 충실한 투자
- 6) 중장기 투자
- 7)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제2항 투자일임업무 절차

계약 체결전	고객 투자목적 등의 파악 및 고객 날인 (별첨1) 계약권유문서 전달(고객 날인/서명)
계약체결	회사소개서, 상품제안서(운용계획서) 등 프리젠테이션 투자일임계약 체결
계좌개설 및 자금입금	고객이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고객명의 계좌개설(카드/인감은 고객 보관)
운용계획 및 성과 보고서	분기 1회 이상 보고
일임수수료	기본수수료/성과수수료 발생시 회사 계좌 입금
계산서	수수료 수령 후 계산서 발행 및 전달 (개인고객은 정산내역서로 대체)

제5조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방안 및 절차)

제1항 투자일임 담당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항 내부통제 제도

회사는 고객들의 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한다. 컴플라이언스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자산운용 행위가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가장 잘 부합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뿐만 아니라 내부기준까지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한다.

제3항 회사는 위와 같은 내부통제 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고객과의 이해상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철저히 통제, 감독한다.

제6조 (회사와 고객의 의무 및 책임)

제1항 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투자일임 계약 체결 전에 고객에게 설명 의무

- ①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②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③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④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⑤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2)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운용 의사반영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3)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 파악

회사는 계약개시일로부터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업을 수행한다.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말 성과보고서 제출시 투자정보확인서 서식을 함께 보내며, 고객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투자목적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투자일임 담당자 변경

회사는 계약기간 중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고객과 상의한다.

5) 이해관계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해당없음

단, 이후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알린다.

6)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비밀유지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재산 내용과 관리사항, 신상내용 및 그 밖의 고객 관련 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한다.

8) 투자일임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금지행위

- ① 고객으로부터 금전 또는 증권의 보관, 위탁을 받는 행위
- ② 고객에게 금전 또는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 또는 증권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⑤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⑥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⑦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자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⑧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증권의 보관, 위탁하는 행위
- ⑨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 집합투자자산 또는 신탁자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⑩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⑪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⑫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 ⑬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일임 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 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⑭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행위

9) 고객과의 상담의무

고객은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당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계약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운용방법의 변경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② 운용규모 및 방법의 변경이 있을 시 관련내용을 합의하여 문서화한다.

제2항 고객의 의무 책임

1) 통지의무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일임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비밀유지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3) 계약자산의 운용책임

회사가 계약자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당사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고객의 운용지시)

리스크관리 목적이나 전략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고객에게 대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제8조 (투자일임수수료의 산정과 지급방법)

제1항 투자일임수수료의 구분과 산정

투자일임수수료는 투자일임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며, 투자일임수수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년 1년을 계산 기간으로 하여 산출하며,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고객이 직접 입금한다.

제2항 투자일임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1) 기본수수료

①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매1년을 계산기간으로 하여 산출하며,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고객이 직접 입금해야 한다. 기본수수료의 경우 선납(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성과수수료는 후납(계계약종료일 또는 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자원금의 감액 또는 계약의 중도해지시 고객에게 환급하는 기본수수료의 경우 7일 이내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본수수료 계산방법(중도 전부 또는 일부)해지시 미경과 수술 일할 계산하여 반환)
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1%

2) 성과수수료

① 성과수수료는 후납(계약종료일 또는 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자원금의 감액 또는 계약의 중도해지시 고객에게 환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7일 이내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수수료 계산방법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 X 성과수수료율

3)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수수료율을 투자수익의 20%이다. 단, 중도해지수수료는 수익금 범위내로 하며 투자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중도해지시 기지급한 기본수수료에 중도 해지수수료를 차감한 후 반환되며, 중도해지 수수료는 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별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객과 회사의 합의 하에 본 기준과 달리 투자일임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자산의 형태)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계약의 체결, 만료 또는 해지시 계약자산의 형태는 그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다.

제10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 보고)

제1항 투자실적의 평가

1) 투자수익률의 계산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자산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2) 미실현 이익의 계산

주식의 경우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하며, 채권의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 등 미실현이익은 사전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2항 투자결과 보고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매분기 1회이상 대면,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보고한다. 투자결과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및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 3) 투자일임재산의 종류별 잔고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 5) 투자일임자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투자일임자산 중 특정 자산을 회사가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 거래실적 및 잔액
-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자간에 정한 사항

제11조 (위험 및 유의사항)

회사는 고객에게 아래의 위험과 유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 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일임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투자일임 계약과 관련한 그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는다.

제2항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으며,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되어 주가 상승 시 고수익이 실현될 수 있지만 주가하락 시에는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제3항 투자자 요청에 의한 계약 중도 해지 시 보유자산을 매도함에 따라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4항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별 첨 1.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 신규정보 제공	□ 기존정보 변경	□ 기존정보와 동일 (기존투자자성향:)
※당사에 제출하신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존정보 변경"을 선택하시고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가장 최근 당사에 제출하신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정보와 동일"을 선택하시고, 아래 사항의 작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투자권유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 투자권유 희망(정보제공필수)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불원)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고객께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및 일반투자자로서 보호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정보

1.고객님의 연령대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2점) <input type="checkbox"/> 20세 ~ 40세 (8점) <input type="checkbox"/> 41세 ~ 50세 (10점) <input type="checkbox"/> 51세 ~ 60세 (8점) <input type="checkbox"/> 61세 이상 (2점)
2.투자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2점)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4점) <input type="checkbox"/> 시장(예: 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6점)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8점)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가능 (10점)

3.향후 본인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연금이 주 수입원임 (3점)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6점)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10점)
4.연소득 현황	<input type="checkbox"/> 3,000만원 미만 (4점) <input type="checkbox"/>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6점) <input type="checkbox"/> 5,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8점) <input type="checkbox"/> 8,000만원 이상 (10점)
5.총 금융자산대비 총 투자상품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40% 이상 (2점) <input type="checkbox"/> 30% 이상 ~ 40% 미만 (4점) <input type="checkbox"/> 20% 이상 ~ 30% 미만 (6점) <input type="checkbox"/> 10% 이상 ~ 20% 미만 (8점) <input type="checkbox"/> 10% 미만 (10점)
6.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RP, CMA 등 (2점)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ELF 등 (4점)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ELF, 혼합형 펀드 등 (6점)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ELF, 주식형펀드 등 (8점)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10점)
7.금융지식수준 및 이해도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0점)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4점)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 하고 있음 (8점)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10점)
8.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4점)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6점)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8점)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10점)
9.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0점)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7점)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8점)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9점)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10점)
10.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경험	<input type="checkbox"/> 경험없음~1년미만 (4점)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 3년미만 (8점)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10점)

■ 위험선호도

<p>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

■ 회사확인

<p>고객투자성향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안정형(20 점이하): 초저위험상품이하 <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20 점초과~40 점이하): 저위험상품이하 <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40 점초과~60 점이하): 중위험상품이하 <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60 점초과~80 점이하): 고위험상품이하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80 점초과~100 점이하): 초고위험상품이하 	<p>확 인</p>	<p>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인)</p>
<p>상품위험등급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저위험: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등 - 저위험 : 금융채, 회사채(A-이상), 원금보장형 ELS/DLS 등 - 중위험 : 회사채(BBB+ ~ BBB-), 원금부분보장형 ELS/DLS 등 - 고위험 : 회사채 투기등급이하(BB 이하), 원금비보장형 ELS/DLS, 주식 등 - 초고위험: 회사채 투기등급이하(BB 이하), 원금비보장형 ELS/DLS, ELW, 주식(신용거래,투자 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관리종목), 선물옵션 등 		

■ 투자자정보 확인

<p>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 입니다. 2. 향후 1년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작성일	년 월 일	고객명	(인/서명)
-----	-------	-----	--------

■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

본인은 귀사로부터 본인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제시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 하고 투자일임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귀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일임계약을 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투자일임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귀사가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귀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 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일 자 : 년 월 일 . 고객의 서명 : (인/서명)

■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

본인은 귀사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위험수준의 투자일임계약을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른 본인의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일임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귀사로부터 본인이 지정한 투자일임 계약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위험 정도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본인에게 부적합하므로 귀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 투자일임계약을 체결과 관련하여 귀사로부터 어떠한 투자권유도 받지 않았으며, 상기 거래가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귀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일 자 : 년 월 일 . 고객의 서명 : (인/서명)

